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상묵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포항에서 규모 5.4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 안전한 지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.

이에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

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,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,

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